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. 02.08 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2. 13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2. 16(목)

2. 개정이유

○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(안 별표2)
 - ㅇ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
 -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 조정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안 별표3)
 -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원 조정 (일반직 증8)

4. 관련법령 등

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조(공무원의 직급구분 등)

나.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('11. 9. 30)

5. 검토의견

- O 조례개정 필요성
 -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정부 방침에 의하여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는 것임
- 0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직 8명 증원으로 정원을 조정 함
- O 결 론
 -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과 정부방침에 따라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, 다만 현재 기능10급 1명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